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86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조정훈·박충권·서천호
박형수·최형두·김용태
김기현·주호영·김대식
정동만·김미애·유상범
최수진·김소희·조은희
서지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유명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된 공교육 교사들과 달리 학원 강사는 즉각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조직적 거래에도 학원 강사 개인의 사법 재판만 진행 중이며, 학원설

립·운영자 등 법인의 정당한 책임은 회피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금지행위) ①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소속 임직원 및 강사는 학원의 운영 또는 교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시험(이하 이 조에서 “학교시험등”이라 한다)의 출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출제자”라 한다)에게 출제자 직무와 관련하여 제작하거나 취득한 학교시험등의 문항·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학교시험등의 문항·정보 등을 이용하여 학원의 교재 또는 교습자료로 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법률 제2150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그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제23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조의3(금지행위) ① 학원설립</u> <u>· 운영자와 그 소속 임직원 및</u> <u>강사는 학원의 운영 또는 교습</u> <u>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u> <u>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u> <u>된다.</u></p> <p>1. 「<u>초·중등교육법</u>」 및 「<u>고</u> <u>등교육법</u>」에 따라 실시되는 <u>각종 시험(이하 이 조에서</u> <u>“학교시험등”이라 한다)의 출</u> <u>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u> <u>“출제자”라 한다)에게 출제자</u> <u>직무와 관련하여 제작하거나</u> <u>취득한 학교시험등의 문항·</u> <u>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u> <u>는 행위</u></p> <p>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학교 <u>시험등의 문항·정보 등을 이</u> <u>용하여 학원의 교재 또는 교</u> <u>습자료로 제작·배포하거나</u> <u>교습하는 행위</u></p> <p>② <u>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u></p>

<p>7. ~ 12. (생략) ② ~ ④ (생략)</p> <p>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2. (생략) <u><신설></u></p> <p>3.·4. (생략) ②·③ (생략)</p> <p>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의2. (생략) <u><신설></u></p> <p>4. ~ 10. (생략) ② (생략)</p>	<p><u>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u> <u>는 제외한다.</u></p> <p>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2조(벌칙)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 <u>2의2.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u> <u>자</u></p> <p>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과태료) ① ----- ----- ----- -----.</p> <p>1. ~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u> <u>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u> <u>위를 한 소속 임직원 또는 강</u> <u>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지 아니</u> <u>한 자</u></p> <p>4.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